

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

2007. 11. 7 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연구소는 메타버스(생활형 가상세계) 연구와 한국 IT산업에서 메타버스의 표준을 선점하는데 있어서 본교의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차세대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기획
2.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응용 기술 및 응용 소프트웨어 연구, 개발
3. 정부 기관의 연구, 개발 사업 참여
4.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지원
5. 연구원의 국제교류 활동
6. 과제 수행 및 연수, 인턴십을 통한 본교 학생의 실무 교육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소장) ①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연구소에 메타버스 연구실, 디지털 미디어 연구실,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메타버스 연구실은 생활형 가상세계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디지털 미디어 연구실은 차세대 웹 환경의 발전방향과 인터넷 플랫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④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실은 스토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⑤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다른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5 조 (실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규정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 11 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비, 후원금 및 기타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부 칙(2007. 11. 7 제정)
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